

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

- 이 기 동 의원입니다.
- 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
- 안 제3조 중
 - “포함하여”를 “포함한”으로,
 - “수급계획을”
“수급에 관한 중·장기계획을 3년이상의 기간을 단위로”
 - 안 제7조에 제③항을 신설하여 “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”로
 - 안 제8조 중
 - “이를 도보존묘지등으로”를 “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”로 한다.
- 이상으로 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 제안을 마치겠습니다.

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정안	수정안
제명 : 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안	제명 : 현행과 같음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동별시행령(이하 "령"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현행과 같음)
제2조(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아 같다.	제2조(현행과 같음)
<p>1. "장사시설"이라 함은 묘지·화장장·남골사원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.</p> <p>2. "평장"이라 함은 시체 및 유관을 제화에 배장한 후 통분을 만들지 아니하고 장석·비석등도 저상에 등축되지 아니하게 끌어내려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.</p>	<p>1. (✓)</p> <p>2. (✓)</p>
제3조(묘지등의 수급계획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묘지·화장장 및 남골사원의 수급계획(이하 "묘지등수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	제3조(묘지등의 수급계획) ① --- 포함한 수급에 관한 종·장기계획(이하 "묘지등수급계획"이라 한다)은 3년 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<p>1. 화장·남관의 확산과 장사문화 개선지원</p> <p>2. 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·홍보활동의 전개</p> <p>3. 불묘규모의 최소화 및 평장 유도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✓)</p> <p>3. (✓)</p>
② 시장·군수는 도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종·장기 묘지등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수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	<p>② (✓)</p>
제4조(남골사원의 설치장소) 남골담·남골터 및 남관당 등 남골사원(장성남골담 및 종교단체·개인명인의 설치하는 남관당은 제외)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	제4조 (현행과 같음)
<p>1. 도로·철도·하천 또는 그 예상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, 20호 이상의 인구가 밀집한 지역,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</p> <p>2.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상이 없는 경우로 관할 시장·군수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</p>	<p>1. (✓)</p> <p>2. (✓)</p>
제5조(묘지등의 설치제한지역) 불교·불수 등을 세해가 발생된 후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역 등 묘지등의 설치제한 지역은 시·군 조례로 정한다.	제5조 (현행과 같음)

제정안	수정안
<p>제6조(보자동의 사전매매 등) 공신보지의 수급을 위하여 표지의 사전매매 등을 허용하는 요건은 시·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보존표지심사위원회 구성) ①충청북도보존표지 심사위원회(이하 "심사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	<p>제7조 ①(현행과 같음) ②(*)</p>
<p>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관계공무원, 학식과 뛰어난 문화재등에 조예가 깊은 자, 관련 기관·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	
<p>(설명)</p>	<p>③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공부원위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p>
<p>제8조(보존표지등의 지정기준) 노지사는 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보존등에 관하여 이를 도보존표기등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도보존표지 또는 도보존분묘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</p>	<p>제8조(보존표지등의 지정기준) ----- 는 노보존표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----- -----.</p>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향토사회·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. 애향정신의 향양에 미마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 3. 지역발전에 혼자한 공로가 있거나 나수 주민의 주보대상이 되는 사의 묘지 또는 분묘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(*) 3. (*)
<p>제9조(도비의 보조) 도지사는 도내 공식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·관리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시·군에 보조할 수 있으며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</p>	<p>제9조(현행과 같음)</p>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남골시설의 설치 및 개·보수 2. 공설·공동묘지의 개발·공원화사업 3. 시·군 사법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4. 민법·시·군간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관리 5.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의 전개 등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(*) 3. (*) 4. (*) 5. (*)
<p>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0조(현행과 같음)</p>
<p>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부칙 (현행과 같음)</p>